

2010년도 제4회 임시이사회 회의록

1. 회의개요

① 회의일시 : 2010. 8. 26(목) 07:30 ~ 09:00

② 회의장소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하 소식당

③ 출석임원

- 이사장 정형근
- 이사 김동만, 김영배, 김동환, 신현호, 박정희, 최영현, 이지현,
이시우, 한문덕, 배종성, 조국현, 안소영, 장기태

④ 상정안건

- 제4회 임시이사회 부의안건 심의·의결
 - 의안 1호 인사규정 일부개정규정안
 - 의안 2호 회계규정 일부개정규정안
 - 의안 3호 일산병원 직제규정 일부개정 규정안
 - 의안 4호 임원추천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규정안
 - 의안 5호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안

⑤ 소관부서 : 기획조정실, 인력관리실, 재정관리실

2. 논의 결과(요지)

1 안건 제1호 인사규정 일부개정규정안

① 제1호 안건 주요내용

- 근무평정방법의 변경 : 다면평가 폐지, 내부평가 및 교육훈련성적 평정 신설
- 가점평정 요소 정비 : 자격가점 및 어학가점 폐지
- 근평반영 평정기간 및 적용비율 변경

② 참석자 발언 요지

이사장 : 의안 1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 이사 : 한 가지만 여쭙 보겠습니다. 저희 공무원의 경우에는 다면평가 결과를 승진이나 성과급제에는 반영하지 않고 개인들의 능력향상을 위한 개별 수요조사에는 사용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다면평가 자체를 폐지하는 이유하고 그 다음에 내부평가 평정을 하신다고 하는데 이것은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알고 싶고요. 또 하나는 자격증 가점을 폐지하는 이유가 입사 시에 반영됐기 때문에 또 다시 중복 반영될 가능성이 있어서 없앤다면, 만약에 재직 중에 이런 자격증을 따도 가점을 주지 않는 건지 그것을 한번 알고 싶습니다.

간 사 : 다면평가는 근무평정시에만 적용을 폐지한다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다면평가는 실시하되 근무평정에서는 제외하고 그 평정 결과를 개인의 자기계발에 활용하게 됩니다. 또한, 내부평가 평정은 각 부서별 업무 특성을 반영한 평가지표에 의해 평가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근무평정에 반영한다는 것입니다.

가점평정은 어학가점과 자격가점인데, 어학가점은 요즘 대체로 어학점수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가점으로 반영하는 것이 현실에 안 맞고, 자격증도 자격소지자가 입사한 경우로 국한시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제외시켰습니다.

○○○ 이사 : 입사한 사람에게 중복 가점을 안 주는 것은 당연하다고 보여지는데요. 재직중에 만약에 변호사라든지 자격증을 땀을 때도 그때도 안 준다는 겁니까?

간 사 : 예. 가점평정만 제외한다는 겁니다. 다만 자격을 취득했을 경우에는 그 분야의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업무 분장을 하고 있습니다.

○○○ 이사 : 내부평가는 어떻게 하신다는 얘기입니까?

간 사 : 각 부서별로 매년 내부평가를 실시 하고 있는데 방금 설명 드린대로 각 부서별 업무특성을 반영한 평가지표에 의해 평가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근무평정에 반영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징수율이라든지

○○○ 이사 : 근무평정 방법을 급격하게 바꾸었을 때 순위가 많이 바뀐다든지, 그런것은 괜찮습니까?

인사부장 : 그래서 내부평가 부분은 저희가 올해 1급에 대해서만 반영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10%만 반영할 계획입니다.

○○○ 이사 : 아 그러면 점진적으로 확대되는 거예요?

인사부장 : 예.

○○○ 이사 : 질문하나 드리겠는데요. 안건 사전설명을 들었을 때, 가점기준이 바뀌면 우수한 인력이 들어오기 힘들지 않겠느냐 하는 지적과 함께, 단서를 달아달라고 했습니다. 최초 입사 시에는 자격가점 반영하는 게 남아 있다고 그랬거든요. 자격,

어학가점을 폐지한다는 것은 아예 최초에도 가점을 안주는 걸로 들리기 때문에 이 밑에다 조그만 글씨로 설명을 달아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사부장 : 신입 직원에 대해서는 입사 시 자격증 여부에 따라 가점을 줍니다.

이사장 : 어떤 것 어떤 것 가점을 줘요?

인사부장 : 현재 어학가점을 주고요. 그 다음에 정보처리기사, 그리고 간호사가 요양직으로 들어올 때는 가점을 안 주지만 행정직이라던가 이런 별도의 다른 부분으로 올 때는 별도의 가산점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회복지사라던지 저희가 근무에 필요한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은 가점을 주고 있습니다

○○○ 이사 : 그래서 제71조 제1항 단서를 삭제한다 써 있잖아요. 입사일 이전에 취득한 자격이나 어학능력에 대해서는 입사당시 직급에 한하여 가점평정한다를 삭제함. 이렇게 보면 입사할 때도 안 주는 것으로 들리기 때문에 거기에 조그만 글씨로 단서를 달아달라고 했습니다. 입사시에는 가점을 준다는 것어요. 그것을 달아주기로 했는데 안 달아줬어요.

○○○ 이사 : 내용은 그대로고 가족만 빠지는 명칭만 변경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동의합니다.

이사장 : 예, 명칭만 바꾸는 겁니다.

③ 논의 결론

제 1호 안건 원안의결

2 안전 제2호 회계규정 일부개정규정안

① 제 2호 안전 주요내용

-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결손처분기준 완화 등
 - 수급자의 재산이 강제집행 비용 및 우선채권액을 초과해도 결손 처분이 가능토록 변경

② 참석자 발언 요지

이사장 : 의안 2호 안전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 이사 : 결손처분 관련입니다. 48페이지를 보면 채무자가 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권자인 경우로 되어 있는데, '수급권자'하고 '수급자'의 개념이 틀리기 때문에 그게 '수급권자'로 해야 될 건지 '수급자'로 해야 될 건지 용어 및 정의부분을 한번 더 검토해서 결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수급자'가 정확한지는 법을 한번 봐야 되겠는데 '수급권자'는 권리가 있는 자 이런 개념이 있고, 그 권리가 있는 자가 신청에 의해서 시군구청장이 '수급자'로 판정, 권리가 있다고 판정이 되면 그때 '수급자'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급권자'한테도 전부 결손처분을 해야 한다면 개념상의 모호한 부분이 있을 것 같고, 시군구청장이 결정한 '수급자'에 대해서 해 주는 것이 우리가 의료급여와 건강보장의 어떤 개념을 분명하게 구분할 수 있는 것 아니겠는지요.

이사장 : 수급자가 맞겠는데요.

○○○ 이사 : 예 제가 볼때는 '수급자'가 맞을 거 같은데, 한번 법률적 판단을 해보시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복지부에 승인요청 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 이사 : 지금 결손처분기준에 들어 있는 이 부분을 삭제해서 강제집행 시에 강제집행되는 부분보다 재산이 많은 경우에 지금까지는 기초생활수급대상자에 대해서도 강제집행을 하다가 이번에는 결손처분해 주는 이런 부분들이 국회에서도 지적되고 해서 규정을 개정하는것 같습니다만, 이게 전제가 될려면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자로 선정될 경우에 여러 가지 재산조사라던지 이런 기본이 확실하게 되어있어야 됩니다. 이런 전제가 안 되어 있어 가지고 일부에서는 생활이 어렵지 않는데 기초생활대상자로 되서 혜택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숫자가 이런 모럴헤저드를 감소하면서까지도 해야 될 정도로 적을 경우에는 우리가 충분히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런 숫자가 어느 정도 있을 경우에는 오히려 이 조치가 전국민적인 모럴헤저드를 부추이는 결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숫자상으로 봤을 때 과연 어느 쪽의 효과가 더 큰 것이냐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팔로업을 해서 이 문제를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관련해서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자인데 재산있다고 강제집행하는 것이 너무 심하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저도 그런 큰 명분을 저버릴 수 없다고 생각 되지만, 그러나 명분에 앞서 우리 정부가 이 부분을 확실하게 해서 국민기초수급대상자로 지정할 때 재산조사라던지 여러 가지 부분들을 더 탄탄하게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사장 : ○○○ 이사님의 말씀과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 동의합니다.

④ 논의 결론

제2호 안건 원안의결

3 안전 제3호 일산병원 직제규정 일부개정규정안

① 제 3호 안전 주요내용

- 건강보험 모델병원으로서의 역할 강화를 위한 연구소 확대 개편
- 대외 경쟁력 및 고객서비스 강화를 위한 대외협력팀 신설, 치매 예방센터 확대 등
- 조직 및 인력 개편에 따른 의사 증원 및 연구직 신설 등

② 참석자 발언 요지

이사장 : 의안 3호 안전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 이사 : 여기 66쪽하고 74쪽에 보면 업무분담표가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을 아마도 기획조정실에서 관장하는 것 같아요. 기획조정실에서 하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은 의료인들이 직접 치료하는 환자들에 대한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쓴 것 같구요. 이게 연구소로 개편 되면 연구소는 병원에서 가지고 있는 진료정보를 가공·생산 하면서 이런 연구성과를 만들어 내게 되는데, 연구소에서 각 개개의 의사들이 진료했던 환자에 대한 진료기록 등을 갖다가 쓸 경우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하는 것이 계속 논란이 되고 있거든요. 연구소에도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을 분장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일산병원 기획조정실장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원에서 개인정보 보호 업무를 총괄하는 업무를 기획조정실에서 했구요. 기획조정실에서 개인정보보호 규칙을 제정하는데 총괄하는 업무를 수행해 왔고 그 규칙이 연구소에도 적용이 되겠습니다.

○○○ 이사 : 그것을 모르는 것은 아니구요. 어차피 그 기준으로 규정을 적용하시는데,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의사가 환자를 진료하면서 얻었던 진료정보를 가지고 어디가서 떠들 수 있구요. 연구소에서 하는 것은 예를 들어 위암환자면 위암 발병률이 어떻고, 치료가 어떻고 그것을 가공 생산하는 과정에 있어서 정보가 노출될 수 있는데, 그것은 또 다른 정보보호 대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연구소에서도 업무분장을 뒤야 나중에 여기서 문제가 생길 때 책임도 부여할 수가 있고, 보다 개인정보에 대해서 조심할 수 있어서 연구소의 업무 중에도 이런 개인정보를 가공하여 통계를 생산할 때 여기서도 하나의 업무분장을 두는 게 타당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일산병원 기획조정실장 : 이사님 아까 말씀드린 개인정보보호규칙이 연구소와 모든 부서에 적용이 되구요. 특히 연구업무 수행하면서도 개인정보보호업무에 유의하도록 그렇게 지침을 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 : 지금 이사님 말씀이 의사가 임상할 때 여러 가지 개인의 신상정보하고 여기에 대해서 통계를 내고 연구하면서 가공했을 때 그것도 중요한 개인정보여서 그것도 보호되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정보가 샀을때도 책임소재도 분명히 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도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을 연구소 업무분장에 넣으라는 얘기에요.

○○○ 이사 : 그런 취지라면 예를 들어 진료지원부에도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을 넣어야 되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의료관련 각종 환자에 관한 개별정보를 그런 필요성이 있다면 진료

지원부에도 넣고 연구소에도 넣고 이래야 되요.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일산병원의 조치가 적절한 것 아니냐.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은 기획조정실에서 총괄하고 말씀하신 연구소에는 그러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해서 특별히 유의할 사항이다 이런 정도지 그런 것을 업무분장에 특별히 넣을 사항은 아니다 이런 생각입니다.

간 사 : 추가적으로 설명드리면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은 총괄해서 기획조정실에 업무분장 하고, 개별 부서 단위에서 필요한 사항은 향후에 규칙이나 지침을 정해서 그 규칙 및 지침을 기획조정실에서 제정한다던지 하는 방식으로 하도록 되었습니다.

이사장 : 기획조정실에서 총괄하는데, 연구소는 어떻게 보면 좀 특별한 부서로서 개인정보관리를 소홀히 할 수 없기 때문에, 임상하고 달리 정보를 가공하는 경우에도 그런 점에서 유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사 : 23명의 의사들이 증원되는데 여기에 관해서 예산관계 등이 전혀 언급된 게 없는데요.

일산병원 기획조정실장 : 지금 간사가 보고드린 대로 증원하는 의사 23명은, 현재 촉탁의로 이미 사용하고 있고 예산이 확보 되어 있습니다. 이를 규정에 현실화 하는 조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도의 예산은 필요 없습니다.

이사장 : 지금 촉탁의로 있는 사람들이 정원으로 바뀔에 따라서 예산이 증액 되는 게 없냐는 그런 말씀인데.

일산병원 기획조정실장 : 예산이 증가되지는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이사장 : 더 드는 것 없습니까?

일산병원 기획조정실장 : 더 드는 것 없습니다.

○○○ 이사 : 기술직 8명을 사무직으로 전환하도록 이렇게 되었는데 얼핏 보기에는 업무성격이 다른 직종인데, 이게 기술직이 사무직으로의 전환이 가능한지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일반 사업장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쉽지가 않고 갈등이 있을 수 있는 부분들도 있는데 이 내용은 어떤 부분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일산병원 기획조정실장 : 일반적으로 사무직 하면 일반 보직에서는 사무직만 포함이 되어있었습니다만 병원에는 일반 사무직과 정보·전산직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병원이 설립된 후 10년 동안 직종별로 기술직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기술직 인원이 8명인데 인원변동이 없다보니까 전혀 승진이라던지 인사에 있어서 융통성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명목상으로라도 승진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사무직으로 통합되서 운영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 이사 : 그러면 보직이 변하는 게 아니고 지금 하는 일은 그대로이면서 그것만 변경된다는 의미로 해석하면 됩니까?

○○○ 이사 : 그동안 전산직이 대개 기술직으로 분류되 왔습니다. 세상이 많이 바뀌어서 전산직을 기술직으로 따로 두는 추세가 아니고, 일반직화하는 추세로 되어 있고 전산직으로 됨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많은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③ 논의 결론

제3호 안건 원안의결

4 안건 제4호 임원추천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규정안

① 제 4호 안건 주요내용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필요 범위 조정 : 이사장, 상임감사, 상임이사 ⇒ 이사장, 상임감사

② 참석자 발언 요지

이사장 : 의안 4호 안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사들 : 없습니다.

③ 논의 결론

제4호 안건 원안의결

4 안건 제5호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안

① 제 5호 안건 주요내용

- 구성인원 : 총 5인 ... 비상임이사위원(3인) ⊕ 외부위원(2인)
 - 비상임이사 위원 3인 : 선임비상임이사가 비상임이사 회의를 주재, 비상임이사회의에서 선임
 - 외부위원 2인 : 이사회에서 선임
 - ▶ 행정안전부 국가인DB를 활용한 법조계, 경제계, 언론계, 학계, 노동계 등 각 분야의 인사 중에서 1인 선임
 - ▶ 공단 구성원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자 1인 선임

② 참석자 발언 요지

이사장 :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수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 이사 : 제가 의견을 내겠습니다. 이게 우리 공단 비상임이사중 세 분, 외부인사 중에서 두 분을 추천해서 다섯 분을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제가 의견을 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공단 비상임이사 중에서 세 분이 들어 가야 되는데, 사실은 우리가 임원추천위원회 참여할 때 좀 분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직전에는 ○○○ 이사님하고 저하고 참여했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부에서는 당연히 참석하게 되어 있으니까 ○정책관님이 참여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저하고 우리 ○○○ 위원님은 직전에 참여했으니까 이번에는 빠지고 전국 농민단체 대표인 ○○○ 회장님하고 소비자단체에 두 분이 계시는데 아무나 해도 상관 없겠습니다만 선임비상임이사가 하셔야 되니까 제 생각에는 ○○○ 선임비상임이사님 등 이렇게 해서 구성을 하면 어떨지요. 빠지는 제가 의견을 내야 될 것 같아서요.

○○○ 이사 : 임원추천위원중 비상임이사 3인에 대해서는 이 회의가 끝나고 비상임이사회에서 따로 선정해야 합니다. 앞에 87페이지에 보시면 이사회 말고 따로 비상임이사회에서 3인을 선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외부위원 두 분만 결정하는 것으로 해야 합니다.

○○○ 이사 : 저는 왜 3명만을 선발을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한국지역난방공사 비상임이사도 맡고 있는데요. 거기서 보면 비상임이사가 임기가 남으면 전부 그냥 임원추천위원이 되거든요. 일부를 선발하지 않구요. 지금 다섯분이잖아요?

그런데 왜 3인으로 정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요. 거기는 5인
다 합니다. 누구를 선발하지 않고요. 왜 3인을 뽑아야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사 : 원래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보면 임원추천
위원회는 5인에서 15인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
효율성 측면에서 그것을 조금 줄인 것 같습니다. 왜 3인이나
하는 것은 우리 내부위원하고 외부위원 비율이 내부위원의
경우에는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위원이 5명일 경우에는 내부 비상임이사님이 3인이고
외부에서 오신 분이 2분을 초과하지 않는 2인으로 이렇게 지금
까지 운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사 : 제가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것을 물어
봤습니다. 종전에 임원추천위원을 7명으로 했을 때 그 중
비상임이사 4명과 외부위원 3명이 구성됐는데, 전체 7명으로
운영했을 때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2009년도
부터 5명으로 조정했고, 그 이후에 5명으로 운영하니까 편안
하고 이래서 5명으로 했다고 합니다.

이사장 : 관행으로. 또 다른 의견은 없으십니까? 의견이 없으시면
제안과 같이 임원추천위원회를 5명으로 구성하겠습니다.

이사장 : 다음은 외부위원 1명과 예비후보 2명을 선출하도록 하겠
습니다. 이사님들께서는 외부위원 후보자 명단을 확인하시고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사 :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국가인재풀
추천자 20명중에서 외부위원 1명을 선임해야 되는 것 같은데,
서울대학교 ○○○ 교수가 보건의료분야 정책전문가로 생각이

되서 추천합니다.

○○○ 이사 : 저는 예비후보로 두 명을 추천할까 합니다. ○이사님이 ○○○ 교수 추천해 주셨는데 선정되면 저는 예비후보로 서울대학교 ○○○ 교수와 연세대학교 ○○○ 교수를 추천하고자 합니다.

○○○ 이사 : 또 한명은 임직원 대변인으로 선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단 구성원 의견을 대변하게 될 위원으로는 건강보험 조직 경영분과에서 자문위원장을 역임하고 있는 한양대학교의 ○○○ 교수를 추천하고, 또 ○○노총 ○○○ 상임부위원장님을 예비후보로 추천하겠습니다.

이사장 :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의견이 없으시면 외부위원으로 ○○○ 교수님과 예비후보로 ○○○ 교수, ○○○ 교수님을 제안하셨고, 안 이사님은 임직원 대변인 위원으로 ○○○ 교수님과 예비후보로 ○○○ ○○노총 상임부위원장님을 말씀을 하셨는데 의견 어떻습니까?

○○○ 이사 : 그게 ○○○ 교수하고 ○○○ 부위원장은 두 분중에 별도로 추천해야할 사람입니다. 공단의 구성원의 의견을 대변하는 자니까 그 두 분 중에 한 분은 별도로 우리가 정해야 되고, 앞 부분에 ○○○ 교수하고 이 분들은 그 분들 중에서 정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제 생각에는 어느 분이든 상관없는데 공단 구성원의 의견을 대변하는 자로서는 ○○○ 교수와 ○○○ 부위원장님하고 두 분이 다 좋은 분이기기는 하지만 ○○○ 교수가 나올 것 같아요.

이사장 :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외부위원은 ○○○ 교수님과 예비후보로 ○○○ 교수님, ○○○ 교수님을 선출하기로 하고, 공단

임직원 대변인으로 ○○○ 교수님과 예비후보로 ○○○ ○○
노총 상임부위원장님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 : 이어서, 선임비상임이사께서 비상임이사회를 개최하여 위원을
선출해 주시는 순서입니다. ○○○ 선임비상임이사께서 회의를
주관하실 수 있도록 상임감사, 상임이사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 감사, 상임이사는 퇴실)

○○○ 이사 : 지금부터 비상임이사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단 상임 감사 추천을 위한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중 비상임
이사 위원 선출을 위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회의에서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구성은 5인, 그 중에서 비상임
이사 위원은 3인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본 회의에서는 3인의
비상임이사위원을 선출하는데 있습니다. 임원추천위원회 비상임
이사 위원으로 선출되시는 분은 좀 전에 논의가 됐습니다만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무기관인 보건복지부 공무원
위원과 추천직 비상임이사 등 총 6명만이 가능함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2009년도 임원추천위원회 비상임이사
위원은 경총 ○○○ 이사님과 ○○노총의 ○○○ 이사님,
그리고 당시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으로 재임하시던
○○○ 이사님께서 참여를 하셨습니다. 이사님들께서는 임원
추천위원회 비상임이사 위원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라겠
습니다.

○○○ 이사 : 제가 아까 할 말 다 했는데 또 하기도 그래서. 아까
드린 말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들 : 그렇게 하시지요.

○○○ 이사 : 그러면 ○○○ 이사님이 추천하신대로 복지부의 ○○○ 이사님하고 저하고 ○○○ 이사님이 선출되는 것으로 하고 결정사항을 본 이사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임원추천위원회 비상임이사 위원선출을 위한 비상임이사회를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이사장, 감사, 상임이사 입장)

이사장 : ○○○ 선임비상임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비상임이사 중에서 임원추천위원으로 선출되신 분은 누구십니까?

○○○ 이사 : ○○○ 복지부 국장님하고 저하고 ○○○ 이사님 세 분이 선출되었습니다.

③ 논의 결론

제5호 안건 수정의결